

보도자료

2010년 6월 28일(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 이정구 과장 (☎750-2610)
조사기획총괄과 정재훈 사무관 (☎750-2611) jhoney23@kcc.go.kr

- 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 -

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은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9일 오후 2시부터 ‘방송·통신·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.

이번 행사는 방송·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확대 및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후규제* 이슈를 방송·통신·융합분야별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.

※ 진입규제와 같이 행위발생 이전에 규제하는 사전규제와는 달리 사후규제는 행위발생 이후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

우선,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 임 준 박사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복잡·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, 이어 이상식 교수(계명대)는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의 통합을 제안한다. 박민철 변호사(김&장)는 신규 융합 시장에서의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한다.

또 지성우 교수(단국대)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 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며, 끝으로 류광현 변호사(태평양)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, 앞으로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사후규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.

붙임 : 세미나 개최 계획 및 발표 주요내용 각 1부. 끝.

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

- 방송통신위원회 사후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
 -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적인 규제관련 행사로 정착 추진
- 주최/주관 : 방송통신위원회/정보통신정책연구원
- 일시/장소 : '10. 6. 29.(화) 14:00~18:00/방송회관(목동) 국제회의장
- 주 제 : 방송·통신·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
- 세부일정

시 간		구 분	발표자	토론자
오프닝 세션	14:00~14:05	개회사	함창용 부원장 (KISDI)	
	14:05~14:10	축사	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 (KCC)	
주제 발표	14:10~15:30	스마트폰 시대의 통신시장 사후규제 이슈 및 발전방향	임 준 박사 (KISDI, 경제학)	홍명수 교수 (명지대, 법학)
		경쟁체제 도입하의 방송시장 사후규제 이슈 및 발전방향	이상식 교수 (계명대, 언론학)	김도연 교수 (국민대, 언론학)
		방송통신기반 신규융합서비스 등장에 따른 융합시장 사후규제 이슈 및 발전방향	박민철 변호사 (김&장, 법학)	이인호 교수 (서울대, 경제학)
	15:30 ~ 15:50	Coffee Break		
	15:50 ~ 16:50	방송·통신·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	지성우 교수 (단국대, 법학)	장하용 교수 (동국대, 언론학)
		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대응방향	류광현 변호사 (태평양, 법학)	강정화 사무총장 (소비자 연맹)
클로징 세션	16:50~17:40	패널 토의	사회자: 이원우 교수 (서울대, 법학), 발표자, 토론자	
	17:40~18:00	질의응답 및 폐회		

세미나 발표 주요내용

-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시장 사후규제 이슈 및 발전방향(KISDI 임준)
 - 음성에서 데이터로의 통신트래픽 전환, MVNO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일반 이용자시장뿐만 아니라 콘텐츠시장, 기업시장 등에 대한 사후규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경쟁체제 도입하의 방송시장 사후규제 이슈 및 발전방향(계명대 이상식)
 - 다양한 방송 플랫폼간 비대칭 규제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을 상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방송법에 IPTV법에서 담고 있는 금지행위 등 규제 내용을 어떻게 보강할 지가 중요과제임
- 방송통신기반 신규융합서비스 등장에 따른 융합시장 사후규제 이슈 및 발전방향(김&장 박민철)
 - 신규융합서비스의 경우 신규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사후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, 사전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 등의 행정지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
- 방송통신·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(단국대 지성우)
 -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며, 방송과 통신 고유영역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분쟁까지 조정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
-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대응방향(태평양 류광현)
 - 쌍방향성을 지닌 융합서비스에서는 수동적인 방송 시청자 개념에 능동적인 이용자 개념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호대상 개념정립이 필요하며, 융합서비스를 아우르는 보호 절차 재정비가 필요함